

제1조(보증 및 용자의 종류)

약정인이 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증 및 용자의 종류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며, 약정체결 이후에 새로 취급하는 보증 및 용자도 특별히 정함이 없을 때에는 이 약정에 포함하기로 합니다.

제2조(거래 한도액)

약정인이 조합으로부터 업무거래를 할 수 있는 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조합은 약정인의 신용등급 및 시공능력평가공시액, 개별보증의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실제거래 보증한도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정인은 조합 제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보증여유한도 범위에서 거래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니다.

구 분			거 래 한 도 액	
한도 거래	보	증	금	원
	용	자	금	원
개별 거래	보증	()보증	금	원
	용자	()	금	원

제3조(약정의 유효기간)

이 약정의 유효기간은 약정일부터 년 월 일까지 약정인이 조합과 거래한 보증의 보증기한 또는 용자금(어음할인 포함)의 상환기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보증기한 또는 상환기일이 경과할지라도 약정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 또는 의무가 완전 종료될 때까지 이 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합니다.

제4조(업무거래의 신청 및 방법)

- ① 한도거래약정의 경우 약정인은 제2조의 거래한도액 범위에서 수시신청에 의하여 업무거래를 하기로 합니다.
- ② 약정인은 업무거래신청시 조합이 요청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기로 하며 구체적인 업무거래 절차 및 방법 등은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5조(담보제공)

- ① 약정인은 그 소유의 출자증권을 「건설산업기본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각종 업무거래 신청시에는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고 그 담보물의 가치하락 등으로 조합이 다른 담보나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요구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② 약정인이 이미 제공하였거나 앞으로 제공하는 모든 담보는 그 담보하는 채무외에 이 약정에 의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공통으로 담보하는 것으로 하며, 조합과의 거래상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여야 할 조합에 대한 모든 주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가 없기로 합니다.
- ③ 약정인은 담보물의 이자, 배당금, 그 밖의 과실에 대하여도 담보의 효력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 ④ 약정인이 제공한 담보는 법적절차에 따르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따라 조합이 추심 또는 처분하여 그 취득금으로 제14조에 따라 채무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 ⑤ 약정인이 제공한 어음 또는 담보가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분실, 멸실, 손상된 경우에는 조합의 청구에 따라 즉시 이에 상응하는 다른 어음이나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 ⑥ 약정인이 액면금액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는 때에는 액면금액란 등을 보충할 권리를 조합에 부여하기로 합니다.

제6조(보증수수료등)

- ① 약정인이 업무거래를 하는 때에는 조합이 정한 요율 및 계산 방법에 따라 산정된 보증수수료와 이자, 어음할인료등을 조합이 정하는 시기에 납부하기로 하며, 보증의 경우 보증기간이 연장되거나 보증금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증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 ② 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은 조합이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요율, 계산방법, 지급시기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하며, 제3조에서 정한 약정의 유효기간중 약정인의 신용등급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신용등급에 따라 산정된 보증수수료와 이자, 어음할인료 등을 납부하기로 합니다.
- ③ 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이 조합에 대한 용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약정인은 조합이 정한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④ 조합의 보증책임 소멸에 따른 약정인의 보증수수료 반환청구권은 보증책임소멸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7조(채무의 부담 및 배상등)

- ① 약정인은 제2조의 거래한도액과 제3조의 약정의 유효기간내에 조합과의 업무거래에 따라 발생한 모든 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② 약정인은 조합이 보증한 금액(공동계약에 있어서 약정인이 자기 이행분만 신청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보증금액을, 타구성원의 이행분을 포함하여 약정인 1인이 신청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증금액 전액을 말함)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금액 및 조합이 정한 상환이자를 지체없이 조합에 변제하기로 합니다.
- ③ 약정인은 약정인이 발급받은 보증서가 분실, 도난 등의 사고로 인하여 오용 또는 도용되어 보증채권자로부터 그 이행청구를 받아 조합이 보증금을 대급하는 때에도 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④ 약정인은 그가 발행하거나 배서 또는 보증한 어음에 의한 용자금에 대하여는 조합이 어음채권 또는 용자금채권의 어느 것에 따라 청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 ⑤ 약정인은 그가 발행하거나 배서 또는 보증한 어음이 부도된 경우에는 조합의 청구에 따라 즉시 상환 또는 환매하기로 합니다.
- ⑥ 약정인은 조합이 가지급한 소송비용, 담보설정·해제비용, 채권보전 및 채권실행에 들었던 법적절차비용(취득한 출자증권의 처분시 조합이 납부하는 증권거래세 포함) 등의 모든 부대채무 및 소송 판결선고일 이후 실제 변제일까지의 지연이자와 조합이 약정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도 손해금을 가산하여 즉시 배상하기로 합니다.

제8조(협조, 통지 및 신고의무)

- ① 약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니다.
 - 1. 조합이 업무거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공사의 시공상황 등을 확인조사하기 위하여 약정인 회사 및 공사현장을 방문하고자 할 때
 - 2. 조합이 양수한 공사대금의 원활한 수령을 위하여 약정인이 발주자에게 협조하여야 하는 모든 사항
- ② 약정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조합에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 1. 보증채권자 또는 제3자로부터 조합의 보증과 관련되는 의무이행의 청구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 2. 조합과의 업무거래대상이 된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와 약정인 사이에 공사계약의 변경, 해약 또는 사고이월등 이 약정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발생 또는 해소된 때
 - 3. 이미 발급받은 보증서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증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소멸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보증채권자에게 공사기성금 또는 선급금을 지급한 때에는 조합이 별도로 정한 사항
 - 5. 약정인의 재산 및 경영 등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
- ③ 약정인은 인감, 상호, 대표자 또는 연대보증인, 주소 및 그 밖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 연대보증인은 자신의 주소등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해당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하기로 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협조, 통지 또는 신고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불이익은 약정인 또는 연대보증인이 그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제9조(통지의 효력)

- ① 조합이 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그 밖의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② 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이 제8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게을리함으로써 말미암아 제1항에 따라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그 밖의 서류가 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에게 연락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0조(변책사항)

- ① 약정인이 이 약정서 및 업무거래에 필요하여 제출한 문서, 서류 또는 어음등(이하 “약정서등”이라 합니다)에 사용한 인장이 조합에 신고한 인감과 대조하여 이를 상당한 주의로써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고 취급한 때에는 인장의 도용, 위조, 그 밖의 사고가 있을 경우라도 이 약정 및 해당 업무거래는 유효한 것으로 하고 이 약정서상의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 ② 약정인이 제출한 약정서등을 조합이 상당한 주의로써 취급한 때에는 그 약정서등에 위조, 변조, 그 밖의 사고가 있음이 발견되더라도 이 약정 및 해당 업무거래는 유효한 것으로 하고 이 약정서상의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 ③ 약정인은 그가 제공한 담보에 관하여 제5조제5항의 사유로 말미암아 손해가 생긴 경우에도 조합에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니다.

제11조(기한이익의 상실 및 사전구상)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통지나 최고없이 모든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고 사전구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은 이의없이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며, 할인어음에 대하여는 즉시 환채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 1. 약정인이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때
 - 2. 약정인이나 연대보증인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정지 또는 당좌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때
 - 3. 약정인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가 법원에 재산보전처분 및 회생절차개시 신청 또는 파산절차개시 신청을 한 때
 - 4. 약정인이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조합원의제명및권리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때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조합은 서면으로 변제, 압류의 해제,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조합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모든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고 사전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은 이의없이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 1. 보증채권자로부터 각종보증금의 청구를 받아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2. 약정인의 공사대양도승인기관에서 일방적인 승인취소 또는 승인조건행사로 인하여 조합의 채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때
 - 3. 약정인이 조세공과금의 체납 또는 출자증권·양수공사대의 가압류·압류등으로 인하여 조합의 채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때
 - 4. 약정인의 용자금에 연체되거나 할인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한 때
 - 5. 약정인의 용자금 이자가 연속 3회 이상 연체된 때
 - 6. 약정인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기본운영자금 용자금 잔액이 한도를 초과하게 되고 조합이 지정한 기일까지 한도초과 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한 때
 - 7. 약정인의 납부유예 된 보증수수료가 확약한 기일까지 완납되지 아니한 때
 - 8. 약정인이 주채무 또는 연대보증채무를 조합이 지정한 배상기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
 - 9. 약정인이 주무관청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 10. 약정인이 행정관청등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때
 - 11. 금융기관등이 약정인 또는 연대보증인을 당좌거래정지처분 이외의 사유로 금융부실거래처로 등록한 때
 - 12.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약정인을 소집(약정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함)하거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때
13. 약정인이 그 밖에 제거래 약정, 관련법규에서 정한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2조(거래제한)

- ① 약정인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조합과의 모든 업무거래를 제한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1.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2. 제8조제2항제4호의 통지의무를 게을리한 때
 3. 그 밖에 조합의 채권관리상 필요한 때
- ② 조합이 약정인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61조에 따라 신용평가를 하여 그 신용도에 따라 업무거래를 제한하거나 조합원간 업무거래에 차등을 두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제13조(담보권의 실행 등 채권보전조치)

약정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이 채권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전통지없이 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담보권 실행 및 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보증에 관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기 전이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제14조(변제충당)

- ① 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의 변제금액 또는 제5조에 따라 조합에 제공된 담보물의 처분금액으로 약정인의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원금의 충당은 상각이 예상되는 확정채권, 신용거래로 발생한 미확정채권, 조합원 연대보증인이 있는 확정채권 순서로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약정인,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조합의 내부규정으로 따로 정한 바에 따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연대보증인의 책임)

- ①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서에 따라 거래하는 어음 및 각종 업무거래신청서 등의 서류에 연대보증인의 기명날인이 없어도 약정인이 이 약정서에 따라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약정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 ②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자격을 상실한 후 제8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체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할 때까지 새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도 계속 연대보증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 ③ 약정인이 제5조제1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한 출자증권 및 그 밖의 담보가 이 약정서에 의한 채무외에 다른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경우 조합이 이 약정서에 의한 채무에 그 출자증권 및 그 밖의 담보를 처분, 충당하지 아니하고 연대보증인에게 바로 채무이행을 청구하거나 그 재산에 대하여 먼저 법적조치를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은 아무런 이의가 없으며, 연대보증인이 2인이상 있는 때에도 연대보증채무액을 균등분할하여 변제할 것을 주장하지 않기로 합니다.
- ④ 연대보증인은 약정인이 거래한도의 부족으로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초과보증 또는 추가보증한도에 의한 보증을 이용한 후 거래한도에 여유가 생겨 해당 보증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 약정에 의한 거래한도액이내로 전환처리할 경우에도 아무런 이의없이 이 약정서의 각조항에 따라 연대보증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 ⑤ 이 약정서의 약정기한 경과후에 약정인 또는 보증채권자의 요청으로 이 약정서에 따라 발급된 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연장하거나(보증기간 연장을 위한 추가보증서 발급 포함) 보증채권자 명의를 변경한 경우 또는 융자금의 상환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은 그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제16조(관련법규)

- ① 약정인은 이 약정서에서 정한 사항외에 관련법규를 준수하기로 합니다.
- ② 관련법규가 개정될 때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을 때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 이 약정서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합니다.

제17조(그 밖의 의무사항등)

- ① 약정인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그 채무의 기한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이미 발급받은 보증서 중 사용하지 않은 보증서는 즉시 반환하기로 합니다.
- ② 약정인은 정액입찰보증서를 보증서 발급일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보증서만 사용하기로 합니다.
- ③ 약정인은 조합의 업무거래와 관련있는 발주자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 ④ 약정인이 보증한도초과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담보로 현금을 예치하고 보증을 받은 때에는 그 이자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니다.

제18조(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동의)

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은 조합이 이 약정서에 의하여 취득한 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의 신용정보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들의 자료를 이용하여 조합업무에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제19조(합의관할)

이 약정서에 의한 채무에 관한 소송은 조합의 거래 영업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약정인 또는 조합이 관할법원을 변경하려면 합의에 따라 그 관할법원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